

산학협력단 공동기기센터 운영규정

(제정 2012. 8. 23.)

(제명변경 2018. 10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산학협력단 공동기기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공동관리장비란 교육 및 연구와 산학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주대학교 구성원 또는 산업체(개인 포함)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. <개정 2013.10.8.>

제3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공동관리장비의 선정 및 해지
2. 공동관리장비의 구입품의, 유지 및 보수
3. 센터 대내외 전용공간의 관리
4. 센터 예산의 편성 및 집행
5. 공동관리장비의 관리 및 운용
6. 장비사용료의 징수 및 관리
7. 공동관리장비를 활용한 공동연구지원 및 교육지원
8.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

제2장 조직

제4조(공동기기센터장) ①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사무국) ① 사무국에는 장비운영팀, 기업지원팀,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국장은 산학연구지원실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 <개정 2015.11.1., 2018.3.1., 2019.9.1.>

③ 팀장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며, 각 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6조(설치) 공동기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7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구매 및 예산계획수립
2. 공동관리장비의 선정 및 해지
3. 센터 장비사용료 징수
4. 센터 연구 및 교육지원
5. 센터 장비활용 업무지원
6. 그 밖에 센터와 관련된 중요 안건

제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공과대학장,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공동관리장비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직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, 간사는 센터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9조(임기)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이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 (회의록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 작성 시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명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.

제4장 삭 제

제12조 삭 제 <2015.12.27.>

제13조 삭 제 <2015.12.27.>

제14조 삭 제 <2015.12.27.>

제15조 삭 제 <2015.12.27.>

제16조 삭 제 <2015.12.27.>

제17조 삭 제 <2015.12.27.>

제5장 공동관리장비의 관리와 운영

제18조(관리의 기본방침) 센터의 장비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철저

히 하여야 한다.

제19조(장비의 관리 및 운영) 센터의 장비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6장 재정 및 회계

제20조(재정 및 회계) 공동기기센터의 재정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교비 및 산학협력단 예산과 공동기기센터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, 회계는 본교 재무 및 회계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입된 모든 공동관리장비는 소급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3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